

검토의견서

【복지정책과】

제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

1. 제안이유

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사업,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
나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다.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(안 제7조)

라.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3. 검토의견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」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

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,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④~⑨ (생략)